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4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최형두·김태호·서천호

송석준 · 조정훈 · 이상휘

박성민 · 윤한홍 · 안철수

이종욱 · 김예지 · 최수진

유상범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 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 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 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4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연 번 |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| 특례유형 | 존속기한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19 |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13조의9 | 사용료 등의 감면 | 2035. 12. 31. |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